

#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

신탁업자 : 신한은행

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
- 종류형 펀드 :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 특별자산투자신탁 Class A, B, I, c-w
- 나. 분류 :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
- 다. 보관·관리기간 : 2011.08.16 ~ 2012.08.15
- 라. 집합투자업자 :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입자·투자중개업자 : NH투자증권, SC제일은행, SK증권, 교보증권, 기업은행, 대우증권, 대한생명, 동부증권, 동양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미래에셋생명보험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영증권, 신한금융투자, 아이비케이투자증권, 엘아이지투자증권, 우리투자증권, 유진투자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제주은행, 케이비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나대투증권, 하나은행, 하이투자증권, 한국산업은행, 한국외환은행, 한국투자증권, 한화증권, 한화투자증권, 현대증권, HSBC은행

## 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-03-26	집합투자업자명칭변경	미래에셋캡스자산운용(주)	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)_집합투자 기구명칭 변경	미래에셋캡스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

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##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## 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교체·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성도회계법인	2011.10.11	3,700,000	수의계약	2012-10-12	성도회계법인	2013.10.11	3,700,000	수의계약

## 7.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(1)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 - 부합함
- (2)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적정함
- (3)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해당사항없음
- (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
  - 공정함
- (5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
  - 적정함
- (6)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 - 해당사항없음
- (7)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생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 - 해당사항없음
- (8)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 -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의 준법감시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투자신탁별 자산배분내역의 적정성과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
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(<http://fund.miraeasset.co.kr>) 및 고객센터서 가입하신 상기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